



논산을 새롭게  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

제130호

**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
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논 산 시 장      |
| 제출연월일 | 2025. 8. 29. |

# 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제130호 |
|----------|-------|

제출연월일 : 2025. 8. 29.
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제안설명자 : 안전총괄과장

## 1. 제안이유

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정 및 관리하기 위한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직제 개편에 따라 변경된 재난수습 주관부서와,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가동 및 편성기준에 따른 참여 부서, 유관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정 및 관리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(안 제3조제3항)

- 시행령 [별표 1의2] 폐지 ⇒ 제3조(제1항~제4항) 신설

나. 직제개편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 변경 사항(안 별표 2)

- 재난수습 주관부서 12호 주관부서란 중 “지역경제과”를 “투자유치과”로 변경

다. 직제개편에 따른 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가동 및 편성기준의 참여 부서, 유관기관 명칭 변경 사항(안 별표 4 및 별표 5)

- 지역개발과 삭제

- “육군3585부대 4대대”를 “육군제3585부대 1대대”로 하고,  
“KT논산지점”을 “KT Netcore 논산선로팀”으로 명칭 변경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감사실-8824(2025. 8. 4.)]
- 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 [복지정책과-24442(2025. 7. 29.)]
- 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 [예산실-8393(2025. 7. 30.)]
- 4) 입법예고
  - 가) 예고기간 : 2025. 7. 28. ~ 2025. 8. 17.(20일 이상)
 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5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- 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안전정책과(041-635-5621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별표 1의2”를 “제3조”로 한다.

제22조제2호 중 “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”을 “법 제15조의2”로 한다.

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 12호 주관부서란 중 “지역경제과”를 “투자유치과”로 한다.

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가동 및 편성기준

1호 준비단계 나목 편성기준 중 “지역개발과”를 삭제한다.

2호 비상 1단계 나목 편성기준 중 “지역개발과”를 삭제한다.

3호 비상 2단계 나목 편성기준 중 “지역개발과”를 삭제하고  
“육군3585부대 4대대”를 “육군제3585부대 1대대”로 하며  
“KT논산지점”을 “KT Netcore 논산선로팀”으로 한다.

4호 비상 3단계 나목 편성기준 중 “지역개발과”를 삭제하고  
“육군3585부대 4대대”를 “육군제3585부대 1대대”로 하며

“KT논산지점”을 “KT Netcore 논산선로팀”으로 한다.

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가동 및 편성기준

2호 편성기준 중 “지역개발과”를 삭제하고

“육군3585부대 4대대”를 “육군제3585부대 1대대”로 하며

“KT논산지점”을 “KT Netcore 논산선로팀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 “육군 제3585부대4대대장”을 “육군 제3585부대1대대장”으로 한다.

| 소 | 관 | 부 | 서 | 성 | 명 |   |            |   |  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---------|---|---|
| 입 | 안 | 전 | 총 | 괄 | 과 | 장 | 김          | 무 | 중 |
| 안 | 안 | 전 | 정 | 책 | 팀 | 장 | 이          | 상 | 권 |
| 자 | 담 | 당 | 자 | 신 | 상 | 육 | (746-6424) |   |   |



[별표 2]

재난수습 주관부서(제4조제2항 관련)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0. 보건복지부 | 가. 감염병 재난<br>나. 보건의료 사고 | 보건소   |
| 11. 환경부   | 가.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   | 환경과   |
|           | 나. 식용수(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) 사고 | 상하수도과 |
|           | 다.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       | 환경과   |
|           | 라. 조류(藻類) 대발생(녹조에 한정한다) | 환경과   |
|           | 마. 황사                   | 환경과   |
| 12. 고용노동부 | 가.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| 지역경제과 |

[별표 4]

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가동 및 편성기준

(제8조제1항제1호 관련)

1. 준비단계

나. 편성기준

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실무반 | 2) 협업기능반<br>(a) | 가) 시설피해<br>응급복구반 | · 농촌활력과, 건설과, 산림공원과,<br><b>지역개발과, 도로과 등</b><br>(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)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
2. 비상 1단계

나. 편성기준

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실무반 | 2) 협업기능반<br>(a) | 다) 시설피해<br>응급복구반 | · 농촌활력과, 축수산과, 건설과,<br>산림공원과, <b>지역개발과,</b><br>도시주택과, 도로과, 상하수도과 등<br>(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)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

3. 비상 2단계

나. 편성기준

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실무반 | 2) 협업기능반<br>(a) | 다) 시설피해<br>응급복구반 | · 투자유치과, 농촌활력과, 축수산과,<br>건설과, 산림공원과, <b>지역개발과,</b><br>도시주택과, 도시재생과, 도로과,<br>상하수도과 등<br>(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)                 |
|     | 재난관리책임기관 등(β)   |                  | · <b>윤근3585부대 4대대,</b> 논산경찰서,<br>논산계룡교육지원청, 논산국토관리<br>사무소, 한국전력공사논산지사,<br><b>KT논산지점,</b>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<br>사, 한국도로공사논산지사, 한국수자 |

[별표 2]

재난수습 주관부서(제4조제2항 관련)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0. 보건복지부 | 가. 감염병 재난<br>나. 보건의료 사고 | 보건소   |
| 11. 환경부   | 가.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   | 환경과   |
|           | 나. 식용수(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) 사고 | 상하수도과 |
|           | 다.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        | 환경과   |
|           | 라. 조류(藻類) 대발생(녹조에 한정한다) | 환경과   |
|           | 마. 황사                   | 환경과   |
| 12. 고용노동부 | 가.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 | 투자유치과 |

[별표 4]

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가동 및 편성기준

(제8조제1항제1호 관련)

1. 준비단계

나. 편성기준

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실무반 | 2) 협업기능반<br>(a) | 가) 시설피해<br>응급복구반 | · 농촌활력과, 건설과, 산림공원과,<br>도로과 등<br>(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)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
2. 비상 1단계

나. 편성기준

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실무반 | 2) 협업기능반<br>(a) | 다) 시설피해<br>응급복구반 | · 농촌활력과, 축수산과, 건설과,<br>산림공원과, 도시주택과, 도로과,<br>상하수도과 등<br>(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)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

3. 비상 2단계

나. 편성기준

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실무반 | 2) 협업기능반<br>(a) | 다) 시설피해<br>응급복구반 | · 투자유치과, 농촌활력과, 축수산과,<br>건설과, 산림공원과, 도시주택과,<br>도시재생과, 도로과, 상하수도과 등<br>(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재난관리책임기관 등(β)   |                  | · <b>윤근제3585부대 1대대,</b> 논산경찰서,<br>논산계룡교육지원청, 논산국토관리<br>사무소, 한국전력공사논산지사,<br><b>KT Netcore 논산선로팀,</b> 한국농어<br>촌공사논산지사, 한국도로공사논산 |

|  |  |  |
|--|--|--|
|  |  | 원공사는산수도센터, 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남부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직원 중 필요 기능 |
|--|--|--|

|  |  |  |
|--|--|--|
|  |  | 지사, 한국수자원공사는산수도센터, 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남부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직원 중 필요 기능 |
|--|--|--|

#### 4. 비상 3단계

##### 나. 편성기준

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실무반 | 2) 협업기능반 (a)  | 다)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투자유치과, 국방산업과, 체육진흥과, 관광과, 농촌활력과, 축수산과, 건설과, 산림공원과, <b>지역개발과</b>, 도시주택과, 도시재생과, 도로과, 상하수도과, 농업기술센터 등 (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)</li> <li><b>육군3585부대 4대대</b>, 논산경찰서, 논산계룡교육지원청, 논산국토관리사무소, 한국전력공사논산지사, <b>KT논산지점</b>,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, 한국도로공사논산지사, 한국수자원공사는산수도센터, 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남부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직원 중 필요 기능</li> </ul> |
|     | 재난관리책임기관 등(β) |               |   |

#### 4. 비상 3단계

##### 나. 편성기준

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|
| 실무반 | 2) 협업기능반 (a)  | 다)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투자유치과, 국방산업과, 체육진흥과, 관광과, 농촌활력과, 축수산과, 건설과, 산림공원과, 도시주택과, 도시재생과, 도로과, 상하수도과, 농업기술센터 등 (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)</li> <li><b>육군제3585부대 1대대</b>, 논산경찰서, 논산계룡교육지원청, 논산국토관리사무소, 한국전력공사논산지사, <b>KT Netcore 논산선로팀</b>,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, 한국도로공사논산지사, 한국수자원공사는산수도센터, 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남부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직원 중 필요 기능</li> </ul> |
|     | 재난관리책임기관 등(β) |               |  |

#### [별표 5]

####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가동 및 편성기준

(제8조제1항제2호 관련)

#### 2. 편성기준

|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실무반 | 2) 협업기능반 (a)     | 다)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투자유치과, 농촌활력과, 축수산과, 건설과, 산림공원과, <b>지역개발과</b>, 도시주택과, 도시재생과, 도로과, 상하수도과 등 (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)</li> <li><b>육군3585부대 4대대</b>, 논산경찰서, 논산계룡교육지원청, 논산국토관리사무소, 한국전력공사논산지사, <b>KT논산지점</b>,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, 한국도로공사논산지사, 한국수자원공사는산수도센터, 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남부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 책임기관 파견직원 중 필요 기능</li> </ul> |
|     |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등(β) |               |   |

#### [별표 5]

####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가동 및 편성기준

(제8조제1항제2호 관련)

#### 2. 편성기준

|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|
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|
| 실무반 | 2) 협업기능반 (a)  | 다)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투자유치과, 농촌활력과, 축수산과, 건설과, 산림공원과, 도시주택과, 도시재생과, 도로과, 상하수도과 등 (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의함)</li> <li><b>육군제3585부대 1대대</b>, 논산경찰서, 논산계룡교육지원청, 논산국토관리사무소, 한국전력공사논산지사, <b>KT Netcore 논산선로팀</b>, 한국농어촌공사논산지사, 한국도로공사논산지사, 한국수자원공사는산수도센터, 한국전기안전공사충남남부지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직원 중 필요 기능</li> </ul> |
|     | 재난관리책임기관 등(β) |               |   |

**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○ 해당 없음

**2. 비용 추계결과****가. 추계의 전제**

○ 해당 없음

**나. 추계결과**

○ 해당 없음

**3. 작성자**

안전총괄과장 김 무 중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## 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

제3조(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) ① 법 제3조 제5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”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·법인을 말한다.

## 1.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기관

가. 지방행정기관

나.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

다.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

## 2. 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(재난관리주관기관은 제외하며, 이하 “실무매뉴얼작성기관”이라 한다) 소속의 다음 각 목의 기관

가. 지방행정기관

나.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

다.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

3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교육청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
4.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(그 지부·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·법인을 포함한다)
5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속기관(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) 및 소관 공공기관·공공단체(그 지부·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·법인을 포함한다)
6. 그 밖에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을 관리하거나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·단체·법인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·단체·법인
  -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·다목, 같은 항 제2호나목·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지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.
  -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 기관·단체·법인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민간 기관·단체·법인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  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·단체·법인에 대하여 소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,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기관·단체·법인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·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